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5-117
----------	--------

제출년월일 : 2025. 10.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유공납세자 선정(안 제3조)
- 다.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안 제4조)
- 라. 유공납세자 선정 등의 취소(안 제5조)
- 마. 유공납세자 사후 관리(안 제6조)
- 바. 시행규칙(안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8. 14. ~ 9. 3.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5)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25. 8.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나.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제3조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정된 유공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1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등록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정관리국 징수과 이언주
연 락 처	02-3153-8702